

## □ 추진 필요성

- 주민서명이 필요한 조례 제정·개폐 청구제도는 엄격한 청구요건과 제한된 절차로 활성화에 한계\*

\* '99년 도입 이후 18년간 239건 발의(연평균 13.2건), '03~'05년 집중 발의된 급식조례 제외 시 94건 발의(연평균 8건)

## □ 추진방안

### < 기본 방향 >

행정자치위원회 회

-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 제정·개폐를 청구하고, 청구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

- (제도 도입) (가칭) '주민발안에 관한 법률'을 제정, 주민에게 조례의 제·개정 및 폐지(안) 제출권 부여 및 청구연령 하향 검토
- (청구요건 완화) 인구 요건 상한만 규정하는 등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
- (전자서명 도입) 조례개폐청구 서명 요청에 있어서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명할 수 있는 시스템\* 운영

\* 자치단체 전산망인 「새울시스템」과 연계하여 의안발의의 모든 절차를 전자적으로 확인하고 진행

## □ 추진일정

- 온라인으로 서명 가능한 스마트 주민참여조례시스템 운영('18~)
- 지방자치법 개정 및 (가칭)주민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(~'19)

## □ 추진 필요성

- 지방선거직에 대한 주민소환 제도의 견제기능 미흡\*
  - \*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('07) 이후 8건 실시
- 주민감사의 청구인 수 기준\*이 높고, 청구제기 대상기간(2년)이 짧아 제도 활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\*\*
  - \* 시·도 500명, 50만 이상 대도시 300명, 시·군·구 200명 범위내 조례로 규정
  - \*\* 연평균 주민감사청구 건수 18건에 불과(서울시 제외 시 8.9건)

## □ 추진방안

### < 기본 방향 >

- 지방선거직(단체장, 의원)에 대한 실질적 견제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실효성 제고

### ○ 주민소환 제도 개선

- 자치단체의 인구 등 규모에 따라 청구요건(서명인 수) 및 개표요건 하향 등 합리적으로 조정
- 주민소환 청구 대상자에 비례대표 지방의원 확대 검토
- '주민소환투표운동 및 서명요청활동의 제한' 규정 개선 검토

### ○ 주민감사청구 제도 개선

- 자치단체 조례 제·개정 평균 청구인수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 수를 하향 조정하고, 청구연령 하향 검토
  - ※ (예시) 시·도 500→300명, 50만 이상 300→200명, 시·군·구 200→150명
- 감사청구 가능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

## □ 추진일정

- (주민소환) 개선방안 마련,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(~'19)
- (주민감사청구) 지방자치법 개정(~'19)

**추진 필요성**

- 주민투표 제도 도입 후 10년 이상 경과하였으나, 활용도가 낮은 상태

※ 주민투표법 시행('04) 이후 8건 : 단체장 발의 1건, 주민 청구 2건, 국가정책 5건

**추진방안**

**< 기본 방향 >**

- 풀뿌리 주민자치 구현의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제도 활성화

○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검토

-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에 열거된 주민투표 제외대상인, 자치단체의 재정·예산 관련 사항, 행정기구의 설치 및 공무원의 인사·정원 등

○ 모바일 기반 투표(M-voting) 도입

- 온라인 청구방식 도입 및 청구인 서명부 서명 방법 개선 등 투표 대상 확대 검토

○ 주민투표 개표 요건 완화

- 자치단체 인구 규모 등에 따라 개표 요건 합리적으로 조정

**추진일정**

- 주민투표제도 개선 방안 마련 및 주민투표법 개정(~'19)